

제2025-20호 2025년 3월 7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174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여수시 조례	제2175호	여수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여수시 조례	제2176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여수시 조례	제2177호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여수시 조례	제2178호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4
○ 여수시 조례	제2179호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	33
○ 여수시 조례	제2180호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여수시 조례	제2181호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53호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8
○ 여수시 규칙	제854호	여수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1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2174호

붙임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라면 신설 누락분(죽림 18, 죽림 19, 죽림 20)을 추가하고 읍촌면 월산5리를 신설 후, 그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읍 면	法定리명칭	행 정 리	비 고
소 라 면	덕 양 리	덕양1, 덕양2, 덕양3, 덕양4, 덕양5, 덕양6	
	죽 립 리	죽림1, 죽림2, 죽림3, 죽림4, 죽림5, 죽림6 죽림7, 죽림8, 죽림9, 죽림10, 죽림11, 죽림12 죽림13, 죽림14, 죽림15, 죽림16, 죽림17, 죽림18, 죽림19, 죽림20	
	관 기 리	관기1, 관기2, 관기3	
	현 천 리	현천1, 현천2, 현천3	
	복 산 리	복산1, 복산2, 복산3, 복산4, 복산5, 복산6	
	사 곡 리	사곡1, 사곡2, 사곡3, 사곡4	
	봉 두 리	봉두1, 봉두2, 봉두3	
대 포 리	대포1, 대포2, 대포3, 대포4		
소 계	8	49	
읍 촌 면	조 화 리	조화, 여흥1, 여흥2, 여흥3, 여흥4	
	월 산 리	청산1, 청산2, 월산1, 월산2, 월산3, 월산4, 월산5	
	산 수 리	산수1, 산수2, 봉두	
	가 장 리	가장, 난화, 중산, 연화	
	상 봉 리	상봉1, 상봉2	
	봉 전 리	봉전, 광암	
	반 월 리	반월, 삼산	
	취 적 리	취적1, 취적2, 신산1, 신산2, 신산3	
	신 풍 리	신풍1, 구암1, 구암2, 신흥, 덕산, 애양, 도성	
여 동 리	송도		
소 계	10	38	
:	:	:	
합 계	63	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	法定리명칭	행정리	읍 면	法定리명칭	행정리
소면	덕양리	덕양1, 덕양2, 덕양3, 덕양4, 덕양5, 덕양6	소면	덕양리	덕양1, 덕양2, 덕양3, 덕양4, 덕양5, 덕양6
	죽림리	죽림1, 죽림2, 죽림3, 죽림4, 죽림5, 죽림6 죽림7, 죽림8, 죽림9, 죽림10, 죽림11, 죽림12 죽림13, 죽림14, 죽림15, 죽림16, 죽림17		죽림리	죽림1, 죽림2, 죽림3, 죽림4, 죽림5, 죽림6 죽림7, 죽림8, 죽림9, 죽림10, 죽림11, 죽림12 죽림13, 죽림14, 죽림15, 죽림16, 죽림17, 죽림18, 죽림19, 죽림20
	관기리	관기1, 관기2, 관기3		관기리	관기1, 관기2, 관기3
	현천리	현천1, 현천2, 현천3		현천리	현천1, 현천2, 현천3
	복산리	복산1, 복산2, 복산3, 복산4, 복산5, 복산6		복산리	복산1, 복산2, 복산3, 복산4, 복산5, 복산6
	사곡리	사곡1, 사곡2, 사곡3, 사곡4		사곡리	사곡1, 사곡2, 사곡3, 사곡4
봉두리	봉두1, 봉두2, 봉두3	봉두리	봉두1, 봉두2, 봉두3		
대포리	대포1, 대포2, 대포3, 대포4	대포리	대포1, 대포2, 대포3, 대포4		
소계	8	46	소계	8	49
읍촌면	조화리	조화, 여흥1, 여흥2, 여흥3, 여흥4	읍촌면	조화리	조화, 여흥1, 여흥2, 여흥3, 여흥4
	월산리	청산1, 청산2, 월산1, 월산2, 월산3, 월산4		월산리	청산1, 청산2, 월산1, 월산2, 월산3, 월산4, 월산5
	산수리	산수1, 산수2, 봉두		산수리	산수1, 산수2, 봉두
	가장리	가장, 난화, 중산, 연화		가장리	가장, 난화, 중산, 연화
	상봉리	상봉1, 상봉2		상봉리	상봉1, 상봉2
	봉진리	봉진, 광암		봉진리	봉진, 광암
	반월리	반월, 삼산		반월리	반월, 삼산
	취적리	취적1, 취적2, 산선1, 산선2, 산선3		취적리	취적1, 취적2, 산선1, 산선2, 산선3
신흥리	신흥1, 구암1, 구암2, 신흥, 덕산, 애양, 도성,	신흥리	신흥1, 구암1, 구암2, 신흥, 덕산, 애양, 도성,		
여동리	송도	여동리	송도		
소계	10	37	소계	10	38
:	:	:	:	:	:
합계	63	208	합계	63	216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김기민



여수시 조례 제2175호

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75호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

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u>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범위</u> (제24조제3항제1호 관련)</p> <p>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u>3</u>만원</p> <p>2. ~ 3. (생략)</p>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u>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범위</u> (제24조제3항제1호 관련)</p> <p>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u>5</u>만원</p> <p>2. ~ 3. (생략)</p>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9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2176호

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4조에 따라 여수시의회”를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중 “여수시의회회의규칙”을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정책의 추진
2.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u>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u> ----- ----- -----.</p> <p><u>제1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u></p> <p><u>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u></p>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정책의 추진

<신 설>

<신 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
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여수시의회회의규칙을 준
용한다.

<신 설>

2.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
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
사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
요한 사항

제15조(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
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

---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
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에 관한 의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수시의회 위원
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

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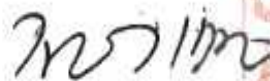
제21조 중 “여수시의회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수시의회위원회 조례”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2177호

붙임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만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내에서다음”을 “내에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천320만원”을 “1천 3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천140만원”을 “1천 14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 같다.</u></p> <p>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 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p> <p>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 서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행	개정안
<p>2. 의사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u>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u>내에서</u> 다음 금액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나. 2급: <u>1천320만원</u></p> <p>다. 3급: <u>1천140만원</u></p> <p>라. ~ 자.</p> <p>3. ~ 9. (생략)</p> <p>② <u>제2항제1호</u>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p>	<p>2. -----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u>내에서</u> 다음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1천 320만원</u></p> <p>다. ---- <u>1천 140만원</u></p> <p>라. ~ 자. (현행과 같음)</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u>제4조제1항제1호</u> ----- ----- ----- -----.</p>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2178호

붙임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나.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수시에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여수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여수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여수시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중단된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청년인구정책관, 건강증진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부교수에 재직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출산·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전문가
7. 그 밖에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생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출생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8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 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통 보 내 용				
소 명 내 용				
20 신청인 (서명)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조영민*



여수시 조례 제2179호

붙임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 1부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천변, 도로변 자투리 땅, 국·공유 유휴 토지, 공터, 벽면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4. “반려나무”란 생활 속 숲 조성으로 시민이 심고 가꾸는 아이나무, 기념목, 상징목 등의 나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조경·화훼·환경·경관·도시계획·디자인·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시민 참여 유도

2.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

3.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식재 수목의 보호·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나무심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공부지, 골목, 천변, 마을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3.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게 나무·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에서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나무 심기에 필요한 자재 및 작업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모니터링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김기민



여수시 조례 제2180호

붙임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를 “자진하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통안전 교육 등)”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3호”로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6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u>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u>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자진하여</u> ----- -----.</p> <p>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① <u>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u></p> <p>1. <u>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u></p> <p>2. <u>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u></p> <p>3. <u>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u></p> <p>4. <u>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u></p> <p>5. <u>그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p> <p>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사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제3호-----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7조(환수) 시장은 운전면허 사진 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p> <p>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p> <p>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제></p>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81호

붙임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현장점검 대항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여수시 건축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 규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p> <p>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버스정류장</p> <p style="margin-left: 20px;">2. 횡단보도</p> <p style="margin-left: 20px;">3. 육교</p> <p>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p> <p>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p> <p style="margin-left: 20px;">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p>
<p><신 설></p>	<p>제9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p>

제9조2(생략)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현행 제9조의2와 같음)

2025년 제1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서승민



여수시 규칙 제853호

붙임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별표1의 명칭 중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을 “웅천포레나1단지 어린이집”으로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을 “웅천포레나2단지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1의 명칭에 “웅천더힐1단지어린이집”을 위치에 “여수시 웅천로 262(웅천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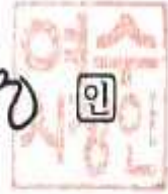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립어린이집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u>별표와 같다.</u></p> <p>[별표1] 여수시립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td>나진어린이집</td><td>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td></tr> <tr><td>남면어린이집</td><td>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td></tr> <tr><td>대성베르힐어린이집</td><td>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td></tr> <tr><td>묘도어린이집</td><td>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td></tr> <tr><td>미평하나어린이집</td><td>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td></tr> <tr><td>봉계어린이집</td><td>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105호(봉계동, 로얄골드밸)</td></tr> <tr><td>삼산어린이집</td><td>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td></tr> <tr><td>수정어린이집</td><td>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td></tr> <tr><td>쌍봉어린이집</td><td>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td></tr> <tr><td>안산어린이집</td><td>여수시 장성3길 30(안산동)</td></tr> <tr><td>여서어린이집</td><td>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td></tr> <tr><td>여천어린이집</td><td>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td></tr> <tr><td>연등어린이집</td><td>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td></tr> <tr><td>웅천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td></tr> <tr><td>꿈모아어린이집</td><td>여수시 성산6길 47-10(화장동)</td></tr> <tr><td>꿈에그림 1단지 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td></tr> <tr><td>꿈에그림 2단지 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td></tr> <tr><td>죽림1단지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td></tr> <tr><td>죽림2단지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td></tr> <tr><td>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td></tr> <tr><td>청솔어린이집</td><td>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td></tr> <tr><td>화정어린이집</td><td>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td></tr> <tr><td>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td></tr> <tr><td>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어린이집</td><td>여수시 학동북4길 7(학동)</td></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나진어린이집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남면어린이집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	대성베르힐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	묘도어린이집	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	미평하나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봉계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105호(봉계동, 로얄골드밸)	삼산어린이집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수정어린이집	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쌍봉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안산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30(안산동)	여서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	여천어린이집	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연등어린이집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웅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	꿈모아어린이집	여수시 성산6길 47-10(화장동)	꿈에그림 1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	꿈에그림 2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	죽림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죽림2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청솔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	화정어린이집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어린이집	여수시 학동북4길 7(학동)	<p>제2조(시립어린이집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u>별표1과 같다.</u></p> <p>[별표1] 여수시립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td>나진어린이집</td><td>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td></tr> <tr><td>남면어린이집</td><td>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td></tr> <tr><td>대성베르힐어린이집</td><td>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td></tr> <tr><td>묘도어린이집</td><td>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td></tr> <tr><td>미평하나어린이집</td><td>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td></tr> <tr><td>봉계어린이집</td><td>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105호(봉계동, 로얄골드밸)</td></tr> <tr><td>삼산어린이집</td><td>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td></tr> <tr><td>수정어린이집</td><td>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td></tr> <tr><td>쌍봉어린이집</td><td>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td></tr> <tr><td>안산어린이집</td><td>여수시 장성3길 30(안산동)</td></tr> <tr><td>여서어린이집</td><td>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td></tr> <tr><td>여천어린이집</td><td>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td></tr> <tr><td>연등어린이집</td><td>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td></tr> <tr><td>웅천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td></tr> <tr><td>꿈모아어린이집</td><td>여수시 성산6길 47-10(화장동)</td></tr> <tr><td>웅천포레나1단지 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td></tr> <tr><td>웅천포레나2단지 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td></tr> <tr><td>죽림1단지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td></tr> <tr><td>죽림2단지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td></tr> <tr><td>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td></tr> <tr><td>청솔어린이집</td><td>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td></tr> <tr><td>화정어린이집</td><td>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td></tr> <tr><td>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어린이집</td><td>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td></tr> <tr><td>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어린이집</td><td>여수시 학동북4길 7(학동)</td></tr> <tr><td>웅천더힐1단지어린이집</td><td>여수시 웅천로 262 (웅천동)</td></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나진어린이집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남면어린이집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	대성베르힐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	묘도어린이집	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	미평하나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봉계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105호(봉계동, 로얄골드밸)	삼산어린이집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수정어린이집	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쌍봉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안산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30(안산동)	여서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	여천어린이집	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연등어린이집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웅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	꿈모아어린이집	여수시 성산6길 47-10(화장동)	웅천포레나1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	웅천포레나2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	죽림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죽림2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청솔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	화정어린이집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어린이집	여수시 학동북4길 7(학동)	웅천더힐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로 262 (웅천동)
명 칭	위 치																																																																																																						
나진어린이집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남면어린이집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																																																																																																						
대성베르힐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																																																																																																						
묘도어린이집	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																																																																																																						
미평하나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봉계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105호(봉계동, 로얄골드밸)																																																																																																						
삼산어린이집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수정어린이집	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쌍봉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안산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30(안산동)																																																																																																						
여서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																																																																																																						
여천어린이집	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연등어린이집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웅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																																																																																																						
꿈모아어린이집	여수시 성산6길 47-10(화장동)																																																																																																						
꿈에그림 1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																																																																																																						
꿈에그림 2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																																																																																																						
죽림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죽림2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청솔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																																																																																																						
화정어린이집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어린이집	여수시 학동북4길 7(학동)																																																																																																						
명 칭	위 치																																																																																																						
나진어린이집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남면어린이집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																																																																																																						
대성베르힐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																																																																																																						
묘도어린이집	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																																																																																																						
미평하나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봉계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105호(봉계동, 로얄골드밸)																																																																																																						
삼산어린이집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수정어린이집	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쌍봉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안산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30(안산동)																																																																																																						
여서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																																																																																																						
여천어린이집	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연등어린이집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웅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																																																																																																						
꿈모아어린이집	여수시 성산6길 47-10(화장동)																																																																																																						
웅천포레나1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																																																																																																						
웅천포레나2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																																																																																																						
죽림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죽림2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청솔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																																																																																																						
화정어린이집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어린이집	여수시 학동북4길 7(학동)																																																																																																						
웅천더힐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로 262 (웅천동)																																																																																																						

2025년 제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54호

붙임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라면 소계를 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소라면			
:	:	:	:
소계	49	255	

별표 1 중 울촌면 월산5리를 신설하고 그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울촌면	월산5	1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1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
		2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2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
		3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2동) 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 1703,1803,1903 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1704,1804,1904

읍면리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상가동)
		4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3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701,1801,1901,20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
		5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3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 1703,1803,1903,20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
		6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4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
		7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101동, 104동) (101동)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1603,1703,1803,1903 (104동)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 1503,1603,1703,1803,1903,2003
		8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201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1902,2002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상가동)
		9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201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 1703,1803,1903,20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 1704,1804,1904,2004
		10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202동)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 1702,1802
		11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202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 1703,18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 1704
:	:	:	: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소계	38	102	
:	:	:	:
계	216	886	

별표 2 중 시전동 17통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시전동	17	1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2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2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3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3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4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4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5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5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6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7동 101~201, 102~202, 103~203, 104~204, 105~205, 106~206 8동 101~201, 102~202, 103~203, 104~204, 105~205, 106~206
		7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6동 101~502, 103~504, 105~506
		8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0동 101~502, 103~504, 105~506
		9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1동 101~502, 103~504
		10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기숙사 101~122, 201~223, 301~322, 401~422

별표 2 중 여천동 39통을 신설하고 그 관할구역을 2통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여천동	2	1	선원동 1321~1325
		2	선원동 1326~1328
		3	선원동 1349 이랑빌 101동 101~104, 201~204, 301~304, 401~404 이랑빌 102동 101~104, 201~204, 301~304
		4	선원동 1349-1 이랑빌 103동 201~204, 301~304, 401~404 이랑빌 104동 201~204, 301~304, 401~404
		5	선원동 1349-3 이랑빌 105동 201~204, 301~304, 401~404 이랑빌 106동 201~204, 301~304, 401~404
		6	선원동 1349-4 이랑빌 107동 201~204, 301~304, 401~404 이랑빌 108동 201~204, 301~304, 401~404
:	:	:	:
여천동	39	1	선원동 137-1~137-15
		2	선원동 138-1~138-11
		3	선원동 149-1~149-10, 148-1~148-12
		4	선원동 139-1~139-6, 140~140-3, 148-13~148-24
		5	선원동 141-1~141-15, 142-1~142-13
		6	선원동 143, 143-14, 144-1~144-5
		7	선원동 145-1~145-5
		8	선원동 146-1~146-8
		9	선원동 146-9~146-17
		10	선원동 147-1~147-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 할 구 역
소라면							
소계	46	221		소계	49	255	
율촌면		<u><신 설></u>		율촌면	월산5리	1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1동) 201,301,401,501,601,701,801, 901,1001,1101,1201,1301,1401, 1501,1601, 1701,1801,1901 202,302,402,502,602,702,802,902, 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
						2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2동) 201,301,401,501,601,701,801, 901,1001,1101,1201,1301,1401, 1501,1601,1701,1801,1901 202,302,402,502,602,702,802, 902,1002,1102,1202,1302,1402, 1502,1602,1702,1802,1902
						3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2동) 203,303,403,503,603,703,803, 903,1003,1103,1203,1303,1403, 1503,1603,1703,1803,1903 204,304,404,504,604,704,804,904, 1004,1104,1204,1304,1404,1504,1604, 1704,1804,1904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상가동)
						4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3동) 101,201,301,401,501,601,701,801, 901,1001,1101,1201,1301,1401,1501, 1601,1701,1801,1901,2001 102,202,302,402,502,602,702,802, 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1902,2002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 구역
율촌면			<신 설>	율촌면	월산리	5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3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1703,1803,1903,20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
						6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4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1702,1802,1902,2002
						7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101동, 104동) 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1703,1803,1903 (104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1703,1803,1903,2003
						8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201동)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 102,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1702,1802,1902,2002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상가동)
						9	율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율촌 국제미소래(201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1703,1803,1903,20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1604,1704,1804,1904,2004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 할 구 역
울촌면			<u><신 설></u>	울촌면	월 산 5 리	10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202동) 201,301,401,501,601,701,801, 901,1001,1101,1201,1301 102,202,302,402,502,602,702,802, 902,1002,1102,1202,1302,1402,1502, 1602,1702,1802
						11	울촌면 월산리 1502-1 외 일원, 여수 울촌 국제미소래(202동) 103,203,303,403,503,603,703,803,903, 1003,1103,1203,1303,1403,1503,1603, 1703,1803 104,204,304,404,504,604,704,804,904, 1004,1104,1204,1304,1404,1504,1604, 1704
:	:	:		:	:	:	
소계	37	91		소계	38	102	
:	:	:		:	:	:	
계	212	841		소계	216	886	

< 별 표 2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시전동	17	1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시전동	17	1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2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2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2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2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3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3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3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3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4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4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4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4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5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5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5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5동 101~501, 102~502, 103~503, 104~504, 105~505, 106~506
		6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7동 101~201, 102~202/ 8동 101~201, 102~202			6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7동 101~201, 102~202, 103~203, 104~204, 105~205, 106~206 8동 101~201, 102~202, 103~203, 104~204, 105~205, 106~206
		7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6동 101~502, 103~504, 105~506			7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6동 101~502, 103~504, 105~506
		8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0동 101~502, 103~504, 105~506			8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0동 101~502, 103~504, 105~506
		9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1동 101~502, 103~504			9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11동 101~502, 103~504
		10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기숙사 101~116, 201~219, 301~319, 401~419			10	신기동 90 롯데첨단소재사택 기숙사 101~122, 201~223, 301~322, 401~422

현행				개정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 구역
여천동	2	1	선원동 137-1~137-15	여천동	2	1	선원동 1321~1325
		2	선원동 138-1~138-11			2	선원동 1326~1328
		3	선원동 149-1~149-10, 148-1~148-12			3	선원동 1349 이랑빌 101동 101~104, 201~204, 301~304, 401~404, 이랑빌 102동 101~104, 201~204, 301~304
		4	선원동 139-1~139-6,140~140-3,148-13~148-24			4	선원동 1349-1 이랑빌 103동 201~204, 301~304,401~404, 이랑빌 104동 201~204, 301~304,401~404
		5	선원동 141-1~141-15, 142-1~142-13			5	선원동 1349-3 이랑빌 105동 201~204, 301~304,401~404, 이랑빌 106동 201~204, 301~304,401~404
		6	선원동 143, 143-14, 144-1~144-5			6	선원동 1349-4 이랑빌 107동 201~204, 301~304,401~404, 이랑빌 108동 201~204, 301~304,401~404
	7	선원동 145-1~145-5	여천동	39	1	선원동 137-1~137-15	
	8	선원동 146-1~146-8			2	선원동 138-1~138-11	
	9	선원동 146-9~146-17			3	선원동 149-1~149-10, 148-1~148-12	
	10	선원동 147-1~147-9			4	선원동 139-1~139-6,140~140-3,148-13~148-24	
	11	선원동 1321~1325			5	선원동 141-1~141-15, 142-1~142-13	
	12	선원동 1326~1328			6	선원동 143, 143-14, 144-1~144-5	
	13	선원동 1349 이랑빌 101동 101~104, 201~204, 301~304, 401~404 이랑빌 102동 101~104, 201~204, 301~304			7	선원동 145-1~145-5	
	14	선원동 1349-1 이랑빌 103동 201~204, 301~304,401~404 이랑빌 104동201~204, 301~304,401~404			8	선원동 146-1~146-8	
	15	선원동 1349-3 이랑빌 105동201~204, 301~304,401~404 이랑빌 106동 201~204, 301~304,401~404			9	선원동 146-9~146-17	
	16	선원동 1349-4 이랑빌 107동 201~204, 301~304,401~404 이랑빌 108동 201~204, 301~304,401~404			10	선원동 147-1~147-9	